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지급담보의 가계수표부도, 주위적청구원인 대여금,예비적 수표금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 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이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2. 장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
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(주위적 청구취지)

- 1. 피고 이◇◇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,



(예비적 청구취지)

- 1. 피고 이◇◇와 장◇◇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
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예비적으로 청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(주위적 청구원인)

- 1. 원고는 피고에게 20〇〇. 〇. 〇. 〇〇〇원을 다음과 같은 약정으로 대여하였습니다.
 - (1) 변 제 기 20 ○ . .
 - (2) 이 율 연 15%
- 2.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(예비적 청구원인)

- 1. 피고 장◇◇는 피고 이◇◇에게 다음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습니다.
 - (1) 금 액 ㅇㅇㅇ워
 - (2) 지급인 ○○은행 ○○지점
 - (3) 지급지 ㅇㅇ시
 - (4) 발행일 20 ○ . .
 - (5) 발행지 ○○시
 - (6) 수취인 이◇◇(피고)
- 2. 피고 이◇◇는 위 가계수표를 20○○. ○. ○. 지급담보를 위해 원고에게 배서 양도 했습니다.
- 3. 원고는 위 가계수표의 지급을 위하여 제시했으나,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.



- (1) 제시시기 2000.0.0.
- (2) 제시장소 ○○은행 ○○지점
- (3) 지급거절증명 시기, 방식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
- 4. 이에 수표소지인인 원고는 발행인인 피고 장◇◇ 및 배서인인 피고 이◇◇에게 합동하여 다음의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합니다.
 - (1) 수 표 금 〇〇〇원
 - (2) 위 돈에 대한 20〇〇. 〇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차용금증서

2. 갑 제2호증 가계수표

3. 갑 제3호증 경찰서사고신고접수증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소장부본2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나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